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철도시설물 점용허가 대상에 지방자치단체 추가 등〉
■ 민홍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334호)

2024. 8.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곽 현 준

목 차

□ 민홍철의원 대표발의(2202334)	1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철도 관련 국유재산 점용허가 신청권자에 지방자치단체 추가(안 제23조의2제1항)	4
2. 지방자치단체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지원(안 제23조의2제3항 신설)	9
※ 참고자료	11

□ 민홍철의원 대표발의(2202334)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민홍철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7. 29.
3. 회 부 일 : 2024. 7.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가철도공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 공공기관 등이 국가가 소유·관리하는 철도시설, 폐선로·폐역사, 유흥지 등 철도 관련 국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점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폐선로 및 오래된 역사 등의 주변지역은 낙후되고 지역주민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없는 우범지대가 될 우려가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친화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해당 지역을 정비하고자 하나, 현행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소유한 철도 관련 시설물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여 철도시설의 다양한 활용에 제약이 되고 이는 지역주민이 철도시설 및 주변지역을 안전하게 이용 및 통행하는 데에 걸림돌이 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가 소유한 철도시설물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점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가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철도시설물의 효율적인 활용을 촉진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가 소유·관리하는 철도시설, 폐선로 등 철도관련 국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점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신청권자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시설물 설치 시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현행	개정안
제23조의2(점용허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려는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의 종류 및 기간 등을 정하여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23조의2(점용허가) ① ----- ----- ----- ----- ----- ----- -----.
1. <u>국가철도공단</u> (국가철도공단이 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 제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철도시설의 활성화와 이용객 편의증진 등을 위하여 국가가 소유·관리하는 철도시설, 폐선로 및 폐역사(부지를 포함한다), 유휴지 등 철도 관련 국유재산(「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운영자산은 제외한다)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경	1. <u>지방자치단체, 국가철도공단</u> ----- ----- ----- ----- ----- ----- ----- ----- -----

현행	개정안
우 ② (생략) <u><신설></u>	----- 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철도 관련 국유재산 점용허가 신청권자에 지방자치단체 추가 (안 제23조의2제1항)

현행법 제23조의2¹⁾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① 국가철도공단 및 국가철도공단이 출자한 법인, ②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철도를 건설하는 민간투자사업 시행자, ③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철도 관련

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점용허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려는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의 종류 및 기간 등을 정하여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국가철도공단(국가철도공단이 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 제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철도시설의 활성화와 이용객 편의증진 등을 위하여 국가가 소유·관리하는 철도시설, 폐선로 및 폐역사(부지를 포함한다), 유휴지 등 철도 관련 국유재산(「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운영자산은 제외한다)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2.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와 관련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철도사업법」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국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3조의2에 따른 점용허가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현행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²⁾에 따르면 국가 외의 자는 국유재산에 건물, 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게 되어있으나, 예외적으로 제18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해당 국유재산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 축조하는 경우는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음. 다만, 이 경우 축조 가능한 시설 범위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³⁾의 사회기반시설 중 주민 생활을 위한 문화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제한되고 있음.

2) 「국유재산법」

제18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 국가 외의 자는 국유재산에 건물, 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의 사회기반시설 중 주민생활을 위한 문화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을 해당 국유재산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 축조하는 경우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 철도, 항만, 하수도, 하수·분뇨·폐기물처리시설, 재이용시설 등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나. 유치원, 학교, 도서관, 과학관, 복합문화시설, 공공보건의료시설 등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다. 공공청사, 보건시설, 방재시설, 병영시설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용시설 또는 생활체육시설, 휴양시설 등 일반 공중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하는 공공용 시설

<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의 범위 >

구 분	내 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주거지 주차장 또는 전통시장 주차장 나.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다.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라. 유해물질에 대한 정수시설 마. 전지자동차 충전시설 바. 산업단지의 완충저류시설 사. 재활용을 분리하는 선별장 아. 농산물 직매장 자. 그 밖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독립된 개별시설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시설 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감염병전문병원 나. 공립요양병원 다.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라. 의료재활시설 마. 노숙인일시보호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또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바. 근로자건강센터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 국공립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또는 공동육아나눔터 자. 박물관, 미술관 또는 과학관 차. 생활문화센터 또는 문화예술교육시설 카. 공공도서관 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상설경기장 파. 그 밖에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독립적인 개별시설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일반 공중의 이용을 위해 제공하는 공공용시설 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체육시설 나. 국민체육시설 다. 복합커뮤니티센터 라. 지역복합복지시설 마. 산업재해 예방시설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일반 공중의 이용을 위해 제공하는 공공용인 독립적인 개별시설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제외 대상	1. 도로, 철도, 하수도 등 선형적(線形的)인 시설로서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지역을 관통하는 시설 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행정업무 수행만을 위한 시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 위에 제1항에 따른 시설이 포함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은 제1항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음)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8조의2(사회기반시설의 범위)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점용허가 신청권을 부여함으로써 철도 유희부지 등 철도 관련 국유재산을 활용하여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구체적으로, 개정안을 도입하는 경우 ①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열거된 시설 외의 다양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으므로 시설물 설치 범위가 확대되는 측면이 있고, ② 「국유재산법」에 따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 외에도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데, 개정안에 따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점용허가만으로 철도 관련 국유재산을 확보할 수 있어 절차가 간소해지는 측면이 있으며, ③ 허가 기간의 경우에도 점용허가는 50년이 가능한 반면, 사용허가는 갱신 신청이 가능하나 기본적으로 5년 이내임.

다만, 개정안은 주민복지 증진 시설 설치를 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현행법 체계에 따른 경우에도 철도 관련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아 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현재 「철도 유희부지 활용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는 있음.⁴⁾

4) 「철도 유희부지 활용지침」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철도 유희부지"란 철도 폐선부지와 철도부지 중 철도운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철도운영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다음의 각목의 부지를 말한다.
 - 가. 철도교량 등 철도 선로의 하부 부지
 - 나. 지하에 조성된 철도시설의 상부 부지
 - 다. 철도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되고 있지 않는 잔여지
 - 라.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부지

< 철도 유희부지 활용사업 진행 절차 >

구상·제안 (지방자치단체)	심의위원회 (국가철도공단)	협약체결 (공단/지자체)	협의체 구성 (지자체/주민 등)	사용허가 (국가철도공단)	설계·시공 (지방자치단체)
- 사업계획수립 - 사업제안 (지자체 → 공단)	- 위원회개최 - 사업계획검토 - 사용방식결정 - 제안채택	- 사업계획 보완 (지자체) - 이행사항 협약 (지자체 ↔ 공단)	- 협의체 구성 - 의견 수렴 - 사업계획 확정	국유재산 내 시설물 사용 허가 (사용허가/대부)	- 기본·실시설계 - 사업시공 - 사후 모니터링

※ 자료 : 국토교통부

< 지방자치단체 철도 유희부지 활용사업 현황 >

사업 목적	사업 건수	사용 면적(㎡)	사업비(억원)
공원·쉼터	27	664,005	1,221
자전거도로·숲길	23	1,647,430	1,604
캠핑장·문화공간·체육시설	16	151,525	310
창업공간	3	5,553	43
계	69	4,336,217	5,233

※ 지방자치단체 철도 유희부지 활용사업 세부 내역은 참고자료 1 참조

※ 국토교통부 (2024.8. 제출)

국토교통부는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점용허가 대상을 철도공단 등으로 한정하고 지자체를 배제한 것은 철도시설 난개발 방지 및 철도안전을 우선 고려한 취지로 볼 필요가 있으며, 「국유재산법」에 따라 주민편의를 위한 문화, 생활체육시설 등 생활SOC시설은 사용허가로 설치 가능하므로 법 개정 실익도 크지 않다는 것임.

3. "철도 유희부지 활용사업"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소유의 철도 유희부지를 주민친화적 공간이나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동 지침에 따라 활용계획의 수립, 제안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주민친화적 공간"이란 철도 유희부지에 쉼터, 산책로, 생활체육시설 등의 설치를 통해 주민의 편의와 여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공공의 공간을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지원(안 제23조의2 제3항 신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시설 점용허가를 받아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철도 관련 국유재산 활용사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법 체계에서 철도시설 점용허가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특정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비용 지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데, 지자체의 주민복지 증진시설 설치가 현행법상 점용료 감면사유⁵⁾에 해당되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어

5)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점용허가) ② 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와 관련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철도사업법」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철도사업법」

제44조(점용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에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제공하기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호의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공사기간 중에 점용허가를 받거나 임시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3.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철도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5.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 비용 지원보다는 점용료 감면사유 중 하나로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국토교통부는 지자체가 설치하는 주민 친화시설의 설치·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지자체 고유사무에 대한 재정지원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75

참고 1

지방자치단체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추진현황

(2024. 8월 기준)

연번	연도	노선	위치 및 규모	사업비 (억원)	주요내용
1	2015	동해 중부선	강원 삼척시 17,383㎡, 1.0km	30	- 장호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 (소재지)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장호리 308번지 일원 • (사업내용) 캠핑장(카라반, 주차장) 조성
2	2015	동해 남부선	경북 포항시 57,226㎡, 4.3km	147	- 포항역~효자역간 포항 철길숲 조성사업 • (소재지) 경북 포항시 남구 효자동 173-4 일원 • (사업내용) 산책로, 자전거도로, 7개의 테마 숲 등
3	2015	경전선	전남 광양시 52,227㎡, 2.5km	23	- 광양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사업 • (소재지) 광양읍 세풍리 838-2일대(60필지) • (사업내용) 자전거도로와 테마 꽃길
4	2015	경전선	경남 함안군 27,863㎡, 2.1km	52	- 도심재생 창조경제권역 구축사업 • (소재지) 경남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말산리, 검암리 일원 • (사업내용) 공원조성, 역사 리모델링, 산책로, 광장
5	2015	경전선	전남 순천시 42,447㎡, 2km	19	- 순천 에코 누비길 조성사업 • (소재지) 순천시 신대리 1237-2, 복성리 26-3번지 일원 • (사업내용) 자전거도로, 산책로, 공원 조성 등
6	2015	수인선	경기 수원시 27,967㎡, 1.6km	14	- 수인선(세류삼각선) 자전거도로 조성사업 • (소재지)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1066 • (사업내용) 자전거도로 · 산책로 조성
7	2016	영동선	강원 태백시 55,521㎡, 0.5km	125	- 태백 오로라파크 조성사업 • (소재지) 강원 태백시 통동 73-78 일원 • (사업내용) 고원역사캐릭터파크, 통리역사관 조성 등
8	2016	임항선	경남 창원시 38,342㎡, 5.5km	98	- 임항선 그린웨이 조성공사 • (소재지) 마산세관~마산회원구 석전동 개나리맨션 • (사업내용) 자전거도로, 산책로, 공원 조성 등
9	2016	경부 고속선	안산 상록구 14,108㎡, 0.4km	15	- 수암 꿈나무 체육공원 조성사업 • (소재지)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 408-3번지 일원 • (사업내용) 체육시설(축구장, 족구장, 풋살장, 배드민턴장 등)
10	2016	경전선	경남 함안군 8,561㎡, 2km	15	- 농촌커뮤니티 재생루트 구축사업 • (소재지) 함안군 검암리, 송정리, 산인면 신산리 일원 • (사업내용) 자전거도로, 산책로 및 쉼터 조성
11	2016	경전선	경남 진주시 185,164㎡, 28km	100	- 참 이야기길 자전거도로 조성사업 • (소재지) 진주시 舊)유수역~舊)내동역 • (사업내용)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12	2016	경전선	경남 하동군 27,640㎡, 2.2km	54	- 그린레일로드 조성사업 • (소재지)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및 광평리 일원 • (사업내용)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연번	연도	노선	위치 및 규모	사업비 (억원)	주요내용
13	2016	경전선	전남 광양시 499,331m² 24.8km	358	- 광양 폐철도 문화재생사업 • (소재지) 광양읍 인동리 227-5번지 일대 • (사업내용)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터널특화사업
14	2017	경전선	경남 함안군 32,809m², 1.2km	26	- 경전선 폐선부지 주민상생공간 조성사업 • (소재지) 경남 함안군 군북면 덕대리, 산인면 신산리 • (사업내용)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쉼터 조성 등
15	2017	경전선	경남 김해시 44,350m² 1.8km	78	- 진영 폐선부지 도시숲 조성사업 • (소재지) 경남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본산리 일원 • (사업내용)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쉼터 조성 등
16	2017	경원선	경기 동두천 5,224m² 0.5km	5	- 경원선 전철 고가하부 공원조성사업 • (소재지) 경기도 동두천시 송내동 541-3번지 일대 • (사업내용) 수목식재, 블록 포장, 시설물설치
17	2018	안산선	경기도 1,545m², 0.1km	24	- 고잔역 청년창업공간 Station-G 조성사업 • (소재지)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285-8번지 • (사업내용) 청년창업공간, 지역주민 활용공간 조성
18	2018	수인선	인천 미추홀구 16,271m², 1.5km	39	- 수인선 유희부지 도시숲길 조성사업 • (소재지)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536번지 • (사업내용) 산책로, 숲길 조성(LED 장미정원, 분수)
19	2018	경전선	경남 김해시 16,171m², 0.5km	18	- 김해시 진영읍 폐선로 숲길 조성사업 • (소재지) 김해시 진영리 701-1번지 일원 • (사업내용) 자전거도로, 산책로, 주민체육시설 조성
20	2018	경부선	대구시 5,269m², 0.2km	7	- 경부고속철도 복개구간 환경개선사업 • (소재지) 대구 동구 신천동 545-2번지 • (사업내용) 수목식재, 벽면녹화, 산책로 조성
21	2018	경춘선	강원 춘천시 3,831m², 0.4km	14	- 컨테이너형 청년 창업공간 조성사업 • (소재지) 강원 춘천시 근화동 391-1번지 • (사업내용) 청년창업공방, 창작공간, 소공연장 조성
22	2018	경부선	경북 경산시 6,777m², 0.3km	9	- 경산역 역전마을 주민쉼터 및 주차장 조성사업 • (소재지) 경북 경산시 옥산동 123-1번지 일원 • (사업내용) 공영주차장, 소공원 조성
23	2018	호남 고속선	충남 공주시 3,250m², 0.3km	7	- 공주역 문화관광 플랫폼 조성사업 • (소재지) 공주시 이인면 신영리 168-1 등 6필지 • (사업내용) 이용객 쉼터, 다용도 데크, 파고라 조성
24	2018	안산선	경기 안산시 2,290m², 0.2km	2	- 문화예술 플랫폼 "Station-A" 조성사업 • (소재지)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289-2번지 • (사업내용) 청년창업공방, 커피공방, 야외 소공연장
25	2019	경전선	경남 창원시 8,117m², 1.3km	21	- 행복 의창 폐철도부지 활용사업 • (소재지) 경남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 427-1 일원 • (사업내용) 공원, 산책로, 주민휴식공간 조성

연번	연도	노선	위치 및 규모	사업비 (억원)	주요내용
26	2019	경전선	경남 함안군 66,607m², 6.1km	95	- 아라캐비 테마로드 조성사업 • (소재지) 경남 함안군 산인면 모곡리 981-1 일원 • (사업내용) 도깨비 테마 자전거도로, 산책로 조성
27	2020	경인선	인천 동구 811m², 0.5km	2	- 만석동 철도 유휴부지 마을환경 개선사업 • (소재지) 인천시 동구 만석동 62-2 일원 • (사업내용) 산책로 및 휴게쉼터 등 조성
28	2021	중앙선	강원 원주시 256,300m², 10.3km	228	- 치악산 바람길숲 조성사업 • (소재지) 강원도 원주시 원주역~반곡역 일원 • (사업내용) 산책로, 자전거도로, 바람길숲 조성
29	2021	경부선	경북 경산시 7,778m², 0.3km	32	- 경산시 옥산동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 (소재지) 경북 경산시 옥산동, 사정동, 옥곡동 일원 • (사업내용) 생활체육공간, 주차장, 소공연장 등 조성
30	2021	경의선	서울 마포구 24,213m², 0.5km	86	- 경의선 선형의 숲 조성 사업 • (소재지) 서울시 마포구 중동 27-51 일원 • (사업내용) 경의선 숲길과 연계한 선형 공원 조성
31	2021	경의선	경기 고양시 5,319m², 0.5km	7	- 경의선 유휴부지 녹지조성사업 • (소재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519-3번지 일원 • (사업내용) 순환산책로, 주민쉼터, 녹지 조성
32	2021	경원선	서울 노원구 428m², 0.2km	2	- 월계역3번출구 인근 보행환경개선사업 • (소재지) 서울시 노원구 월계2동 259-1 일원 • (사업내용) 보행로, 주민쉼터 조성
33	2021	경전선	경남 창원시 3,876m², 0.3km	6	- 내서읍 중리 산책로 조성사업 • (소재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 677-2 일원 • (사업내용) 공원, 산책로, 휴게공간 조성
34	2022	중앙선	경기 양평군 29,037m², 1.3km	17	- 폐철도를 활용한 선형공원 조성사업 • (소재지)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도곡리 695-5 • (사업내용) 빗터널, 산책로 조성
35	2022	삼척선	강원 동해시 1,325m², 0.25km	11	- 전천 스카이가든 조성사업 • (소재지) 강원도 동해시 나안동 폐철교 • (사업내용) 산책로, 쉼터, 휴게시설 조성
36	2022	중앙선	경북 영주시 9,217m², 0.5km	15	- 영주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 (소재지) 영주시 휴천동 38-5번지 일원 • (사업내용) 산책로, 휴게쉼터, 공공시설 조성
37	2022	중앙선	경북 안동시 81,900m², 2.2km	157	- 원도심~월영교 테마화거리 조성사업 • (소재지) 안동시 법흥동, 상아동 일원 • (사업내용) 테마화거리, 휴게시설 조성
38	2022	동해 남부선	울산시 198,738m², 9.5km	280	- 울산시 북구 하나로 어울길 조성사업 • (소재지) 울산시 북구 농소1·2동, 송정동 일원 • (사업내용) 선형거리, 테마광장 조성

연번	연도	노선	위치 및 규모	사업비 (억원)	주요내용
39	2022	동해 남부선	부산 기장군 252,600m ² , 8.18km	382	- 빗·물·꿈 에코 스티치 Rail road • (소재지)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일광면, 장안읍 일원 • (사업내용) 광장, 쉼터, 터널, 조각공원 조성
40	2022	군산선	전북 군산시 51,582m ² , 2.5km	200	- 군산 철길숲(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 (소재지) 사정삼거리 및 조촌동 일원 • (사업내용) 바람길숲, 산책로, 공원 조성
41	2022	장항선	전북 익산시 30,000m ² , 1.5km	30	- 미세먼지 차단숲 및 오산 도시숲 조성 • (소재지) 익산시 송학동 880-4번지 일원 • (사업내용) 산책로, 쉼터 조성
42	2022	군산선	전북 군산시 10,068m ² , 1km,	15	- 군산시 광장 및 쉼터 조성사업 • (소재지) 군산시 금암동 139-48 일원 • (사업내용) 광장, 놀터 조성
43	2022	경전선	전남 광양시 16,613m ² 0.4km	9	- 섬진강 매화공원 조성사업 • (소재지) 광양시 다압면 신원리 산8-3 등 20필지 • (사업내용) 매실재배단지, 산책로, 자전거도로, 꽃길 조성
44	2022	경의 중앙선	서대문구 237m ² 0.02km	3	- 아웃도어 다이닝 플레이스 이화쉼터 조성 • (소재지)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16-7 • (사업내용) 주민쉼터, 소공원 조성
45	2022	경원선	경기 연천군 146,729m ² 2.4km	26	- 경원선 폐선철도 활용사업 : 다시 그대로(路) 경원선 • (소재지)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255-1 등 50필지 • (사업내용) 철교공원, 리버마켓, 꽃길명소화 사업 등 조성
46	2022	대구선	영천시 1,144m ² 0.2km	10	- 폐철도부지 도시숲(치유경관숲) 조성사업 • (소재지) 경북 영천시 성내동 224-2 등 5필지 • (사업내용) 휴게시설, 향기원, 계절숲, 포토존 등 조성
47	2022	전라선	익산시 47,000m ² 2km	40	- 오산면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 (소재지) 전북 익산시 오산면 오산리 1071 등 6필지 • (사업내용) 미세먼지 저감수종 식재, 쉼터, 산책로 등 조성
48	2023	경의선	서대문구 841m ² 0.03km	4	- 북아현 연결녹지(공원) 조성 • (소재지) 서대문구 북아현동 1011-9 • (사업내용) 공원, 주민쉼터(정자, 의자 등)
49	2023	경춘선	남양주시 23,042m ² 0.57km	52	- 금곡동 Slow & Smart Ctiy 도시재생 • (소재지) 남양주시 금곡동 682-1 등 15필지 • (사업내용) 스마트 어울림 마당, 스마트팜, 자전거길 조경 식재
50	2023	경원선	양주시 2,304m ² 0.28km	2.5	- 경원선 유희부지 자전거도로 및 보행로 개설사업 • (소재지) 양주시 덕계동 267-1 등 11필지 • (사업내용) 자전거도로 및 보행로, 휴게공간

연번	연도	노선	위치 및 규모	사업비 (억원)	주요내용
51	2023	분당선	용인시 4,700m ² 0.08km	2	- 유휴지 공간 활용을 통한 모두의 정원 조성 • (소재지) 용인시 상갈동 465-5 등 6필지 • (사업내용) 수목식재 및 편의시설 설치
52	2023	중앙선	영주시 2,800m ² 0.08km	5	- 영주시 실외정원 조성사업 • (소재지) 영주시 영주동 470-43 등 5필지 • (사업내용) 산책로, 휴게쉼터 등
53	2023	중앙선	안동시 1,253,328 m ² 35km	1,148	- 도심 속 복합 Railway, 안동 이음길 조성사업 • (소재지) 안동시 북후면 웅천리 329-2 등 944필지 • (사업내용) 자전거/보행자 도로, 안동철교 특성화, 루미너스 터널, 쉼터 등
54	2023	동해선 괴동선	포항시 20,490m ² 1km	3.6	-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유강 완충녹지) • (소재지) 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강리 26-3 등 122필지 • (사업내용) 산책로, 자전거도로, 휴게·편의시설, 수목식재 등
55	2023	경전선	사천시 44,654m ² 1.14km	60	- 가칭 “곤명웰니스파크” 조성계획 • (소재지)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봉계리 524-1 등 5필지 • (사업내용) 산책로, 꽃터널, 클럽하우스 및 파크골프장 등
56	2023	경전선	함안군 70,363m ² 6.7km	40	- 철도유휴부지 활용 자전거도로 연결사업(군북~진주간) • (소재지) 경남 함안군 군북면 원북리 48-1 등 11필지 • (사업내용)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등
57	2023	경전선	창원시 20,802m ² 3.04km	19	- 내서 용담(신당터널)~광려천 자전거도로 조성사업 • (소재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용담리 161-3 등 59필지 • (사업내용) 자전거도로, 휴게시설, 데크로드 등
58	2023	경전선	김해시 50,400m ² 2km	70	- 진영 폐선부지 도시바람길 숲 조성사업 • (소재지) 김해시 진영읍 좌곤리 636-1 등 84필지 • (사업내용) 자연쉼터, 회복숲, 숲속쉼터,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등
59	2023	동해 남부선	울주군 46,385m ² 0.75km	22	- 울주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 (소재지) 울주군 온양읍 고산리 502-3 등 124필지 • (사업내용) 파크골프장, 관리장, 주차장 등 조성
60	2023	전라선	익산시 48,186m ² 1km	40	- 인화동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 (소재지) 익산시 인화동1가 218 등 8필지 • (사업내용) 철길 광장, 산책로 및 쉼터 등 주민친화공간 조성
61	2023	경부선	부산진구 2,600m ² 0.1km	240	- 개금동 레일스포츠파크 조성사업 • (소재지) 부산시 부산진구 개금동 129-1 등 1필지 • (사업내용) 문화 체육복합센터(체육센터, 풋살장 등) 조성
62	2023	경춘선	노원구 5,610.9m ² 0.87km	83	- 경춘선숲길 연장 및 특화공간 조성사업 • (소재지)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85 등 5필지 • (사업내용) 산책로, 커뮤니티 공간 등 주민친화공간 조성

연번	연도	노선	위치 및 규모	사업비 (억원)	주요내용
63	2023	경원선	동두천시 3,350m ² 0.17km	9	- 소요산역 하부 공간 주민친화시설 조성사업 • (소재지) 동두천시 상봉암동 70-1 등 1필지 • (사업내용) 커뮤니티 및 쉼터 공간, 체육시설 조성
64	2024	동해 남부선	경주시 4,040m ² 0.1km	10	- 북경주 주민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 (소재지) 경주시 안강읍 안강리 431-2 등 23필지 • (사업내용) 경주시 공공체육6시설 확충을 위한 테니스장 및 족구장 조성
65	2024	경춘선	가평군 2,803m ² 0.83km	5	- 청평 폐철길 유휴부지를 활용한 둘레길 조성 • (소재지)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 산13-2 일원 • (사업내용) 페터널을 활용한 조명 및 벽화, 포토존 조형물, 데크쉼터 등
66	2024	동해 남부선	울산시 울주군 16,806m ² 2.6km	97	- 웅기마을 O! 힐링산책로 조성사업 • (소재지) 울산 울주군 온양읍 고산리(웅기마을) • (사업내용) 맨발걷기길(황토길), 터널 내 불가마 콘텐츠, 노천족욕탕, 데크쉼터 등 조성
67	2024	서해선	화성시 23,989m ² 12개소	35	- 서해선 교각 사이음공원 조성사업 • (소재지)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팔탄면, 남양읍 일원 • (사업내용) 체육시설, 공원시설 등 주민친화공간
68	2024	중앙선	영천시 3,637m ² 0.26km	5	- 북안면 임포마을 실외정원 조성 • (소재지) 경북 영천시 북안면 임포리 142-3 일원 • (사업내용) 산책로, 맨발길, 휴게시설, 수목 식재 등 조성
69	2024	대구선	경산시 4,850m ² 0.5km	15	- 하양 금락리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 (소재지) 경북 경산시 금락리 일원 • (사업내용) 공원, 쉼터, 주차시설 등 조성

참고 2

철도시설 점용허가 현황 (2024년 8월 기준)

구분		역사명 (노선)	점용허가 받은자	점용면적 (㎡)	점용기간	근거 법령	시설물 종류 등
민 자 역 사	유 형 중	서울 (신역사)	한화커넥트(주)	46,206.24	2003.11.21 2033.11.20	철도 사업법	역무시설 +상업시설 (백화점 등)
		산본	산본역사(주)	12,838.60	1997.11.28 2027.11.27		
		부천	부천역사(주)	27,194.60	1999.01.28 2029.01.27		
		부평	부평역사(주)	27,899.90	2000.02.21 2030.02.20		
		안양	안양역사(주)	27,621.00	2002.05.07 2032.05.06		
		수원	수원애경역사 (주)	80,300.00	2003.02.11 2033.02.10		
		대구	롯데역사(주)	40,306.60	2003.02.13 2033.02.12		
		용산	(주)에이치디씨 아이파크몰	121,872.97	2004.09.22 2034.09.21		
		신촌	신촌역사(주)	18,065.00	2006.09.12 2036.09.11		
		왕십리	(주)비트플렉스	45,951.28	2008.09.03 2038.09.02		
		구미	한국철도공사	7,907.00	2008.10.31 2038.10.30		
		평택	에이케이에스 앤 디(주) AK평택점	35,053.00	2009.04.11 2039.04.10		
		청량리	한화커넥트(주)	61,235.92	2010.08.06 2040.08.05		
		의정부	신세계의정부 역사(주)	54,736.00	2012.04.10 2042.04.09		
	공 사 중	창동	창동역사(주)	44,567.00	2004.07.01 준공시까지		
공 단 개 발 사 업	유 형 중	동해 남부선	해운대블루라 인(주)	97,387.00	2020.09.30 2050.09.29	철도 건설법	폐선을 활용한 관광사업 (레일바이크 등)
		경춘선	(주)강촌레일 파크	379,658.00	2012.08.10 2042.08.09		
		영동선	(주)하이원 추추파크	519,343.00	2014.08.15 2044.08.14		
		공덕	공덕 경우 개발(주)	15,837.30	2017.01.14 2047.01.13	호텔, 업무시설, 주차장 등	
		홍대입구	마포애경 타운(주)	20,846.20	2018.07.26 2048.07.25		
		광명D	(주)광명역 환승파크	12,672.00	2018.08.30 2048.08.29		

구분		역사명 (노선)	점용허가 받은자	점용면적 (㎡)	점용기간	근거 법령	시설물 종류 등
	공사 중	광명	광명역복합 터미널(주)	74,764.40	2012.11.27 2042.11.26		
		인천논현	인천논현역 개발(주)	3,431.20	2017.11.18 준공시까지		
기 타 사 업	운영 중	가좌 행복주택	LH	23,646.00	2016.12.20 2056.12.19	공공 주택법 6)	공동(임대)주택
		오류 행복주택	LH	25,209.00	2018.07.01 2068.06.30		
		안양관양 행복주택	경기도시공사	2,077.90	2018.03.27 2058.03.26		
		광주 행복주택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12,563.00	2019.06.25 2069.06.24		
		동대구 박차장	(주)신세계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13,229.60	2016.12.03 2046.12.02	철도 사업법	동대구 환승 센터 차고지

6)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4(「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특례) 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에서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로 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철도사업법」 제42조 및 제44조에도 불구하고 그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하여 50년 이내의 범위에서 철도시설의 점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